

언론보도에 의한 초상권 침해 소송의 경향과 특성

Study on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Infringement the Right to Likeness by the Press

동세호*, 김성용*, 안호림**
한양대학교*, 인천대학교 교양학부**

Seho Dong(hodong@sbs.co.kr)*, Sungyong Kim(ksypr@naver.com)*,
Horim Ahn(horimahn@incheon.ac.kr)**

요약

본 연구는 언론보도에 의한 초상권 침해 관련 판결의 추이와 승패 여부, 원인 등 초상권 침해를 둘러싼 언론소송 특성을 고찰하기 위한 것으로 최종심 판결이 처음 나오기 시작한 1990년부터 2014년까지 언론보도에 의한 초상권 침해 관련 판결 81건을 전부 수집해 판결문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언론을 상대로 제기된 초상권 침해 관련 소송의 최종심 재판 결과가 처음 나온 것은 1990년이다. 1990년대에는 주로 선정적 보도가 많았던 월간잡지를 대상으로 하는 초상권 분쟁이 많았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방송을 대상으로 한 초상권 침해 분쟁이 크게 늘어났다. 2000년 이후에는 초상권 관련 언론소송의 71% 가량이 방송에 집중됐다. 방송의 영향력이 커진데다 영상을 필수로 하는 방송의 특성상 초상권 침해 소지가 높았기 때문이다. 특히 2005년 「언론중재법」이 시행된 후 초상권 관련 소송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초상권 관련 언론소송 81건 가운데 언론사가 승소한 사건은 23건으로 언론사 승소비율은 28.4%에 그쳤다. 이는 법원이 언론매체의 특수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일반인의 초상권 보호를 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로 분석된다. 하지만 원고가 공인인 경우 언론사 승소율이 52.9%에 달해 일반인 경우의 언론 승소율 22%보다 월등히 높아 언론사를 상대한 초상권 소송에서 공인이 일반인에 비해서 불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7년 이후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공인 이론의 적용으로 공인에 대한 언론의 감시기능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중심어 : | 초상권 | 언론자유 | 인격권 | 언론소송 | 공인 |

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the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Infringement of right to likeness by the Press in Korea. We did an analysis of 81 cases of the court's rulings related to Infringement of right to likeness by the Press from 1990 to 2014. As a result, it shows that the first court's ruling of portrait rights violations by the press was made in 1990.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the increasing number of disputing cases over Infringement of right to likeness against Broadcasting media in the 2000s compared to monthly magazines in the 1990s, which were regarded as gonzo journalism. Since the 2000s, 71% of lawsuits regarding Infringement of right to likeness has been against the Broadcasting Media due to increasing the influence of the broadcasting and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right to likeness by visual images. Especially, the number of lawsuits on infringement of rights to likeness has increased rapidly by the Broadcasting Media. Only 23 cases(28.4%) of total 81 cases were decided in favor of the press. the press shows the low success in disputing the rights of likeness. this study shows the korean courts put more weight on the right to likeness and the breaking a balance between freedom of the press and right of person's character. However, 52.9% of the cases was decided in favor of The press against the plaintiff of public figures compared to 22% against the public. It can be difficult for public figures to win lawsuit against the press causing the Infringement of right to likeness. Judging from this fact, it seemed that the court recognized media watchdog for public figures.

■ keyword : | Rights to Likeness | Freedom of the Press | Rights of a Person's Character | Press Lawsuit | Public Figure |

I. 서론

최근 우리사회의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초상권 침해를 둘러싼 분쟁과 시비가 늘어나고 있다[1-3]. 특히 언론에 의한 초상권 침해는 대중매체의 파급력으로 당사자에게 피해가 클 뿐 아니라 원상복구가 쉽지 않아 자주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 보도는 초상권을 둘러싼 한국 언론의 취약점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 가운데 하나였다. 세월호 참사보도에서 드러난 한국 언론의 무분별한 초상 보도를 계기로 쏟아진 질타와 비판은 한국 언론이 초상권 보호에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4].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일부 방송에서 사실 확인도 없이 ‘전원구조’라는 자막 속보를 내보내는 오보에 이어 언론들이 경쟁적으로 미성년의 생존자나 실종자, 희생자는 물론 오열하는 유가족들의 얼굴 사진과 근접 영상을 여과 없이 보도해 당사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특히 영상을 기본으로 하는 방송은 물론 신문 등 대중 매체들도 시각적 이미지를 표현하는 사진과 영상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진데다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빠른 전파와 캡처기술의 발달로 초상권 침해의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다[5-7]. 백 마디 말이나 기사보다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영상이나 사진이 갖는 함축성이나 상징성이 대중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방송은 영상과 음성을 통해 전달되는 영상의 주목도와 이해도가 글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신문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방송에 의한 초상권 침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8].

언론은 보도의 사실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생생한 초상을 보도하고 싶어 하는 반면에 당사자들은 원하지 않는 초상보도로 인한 피해를 두려워하고 있다.

언론에 의한 초상권 침해는 지나친 언론사간 속도경쟁과 상업성과도 관련이 있다. 경쟁사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생생한 영상이나 사진을 보도하려는 언론사간 속도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화면을 통한 상업적 경쟁이 노골화 되면서 개인의 초상권 보호가 더욱 소홀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9].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는 언론의 초상보도를 둘러싼 분쟁에서 언론의 매체 특수성을 고려하기보다는 개인의 초상권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인권 우위의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0].

최근 들어 개인의 초상권 보호를 우선하는 법원 판결의 영향으로 언론이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도 없이 불필요하게 모자이크 처리를 남발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11]. 이 때문에 보도의 사실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고 무분별한 화면 처리로 시청자들의 원성을 사기도 한다.

초상권 관련한 언론 소송이 증가하는 것은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로부터 적절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 문제다[12]. 언론인들은 때로는 지나친 초상권 보호 요구로 언론이 숨 쉴 공간이 점점 더 좁아져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초상권 보호 요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언론은 취재와 보도에서 초상권을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 특정인의 초상을 촬영 보도할 수 있는 건지, 또 어떤 경우에 불법이 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그때그때 언론사 자체 판단에 따라 결정되다보니 일관성이 부족하고 실수나 오류로 인한 초상권 침해 가능성도 상존하는 게 문제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언론에 의한 초상권 침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언론의 자유와 관련하여 어디까지 초상권 침해가 허용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도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상권 관련 언론 소송의 판결 내용과 결과를 전부 추출해 판결의 결과와 특성, 경향을 파악하고 함의를 추출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판례에 나타난 초상권 관련 언론소송의 특성과 추이를 분석하는 것은 언론에 의한 초상권 침해 분쟁의 실태와 경향성을 파악하고 초상권 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함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 연구 검토 및 이론적 논의

1. 초상권의 개념과 성격

초상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초상, 즉 얼굴을 비롯한 신체적 특징에 대해서 갖는 인격적, 재산적 권리를 말한다[14][15].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초상권은 사람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16]. 특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으로 얼굴과 목소리, 성명, 필체 등을 포함 한다[17].

이러한 초상권의 개념은 독일의 인격권 개념과 미국의 프라이버시권을 수용한 것으로 초상권을 인격권의 일부로 보고 있다. 여기서 인격권이란 인격적인 이익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사적 권리로 구체적으로는 생명, 자유, 신체, 명예, 사생활의 비밀, 초상, 성명, 음성, 대화 등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언론중재법」 제5조 1항은 “언론은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부여 등에 관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인격권의 범위를 폭넓게 보장하면서도 각각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초상권은 학설과 법원 판례를 통해서 개념이 형성되면서 초기에는 인격권적인 측면이 강조되다가 점차 재산권적인 권리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18]. 이러한 초상권은 “①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하지 않을 권리인 촬영 작성 거절권, ②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 복제되지 않을 권리인 공표 거절권, ③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않을 권리인 초상 영리권을 포함 한다”고 법원은 구체적으로 초상권의 내용을 밝히고 있다[19].

이 가운데 유명인 또는 특정인의 초상이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인 ‘초상 영리권’은 재산권적 초상권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영미법의 퍼블리시티권과 같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별개의 것으로 보기도 한다[20].

2. 초상권의 인정과 선행연구 검토

초상권이 한국 법원에서 처음 인격권의 하나로 인정된 것은 1982년이다[21][22].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울산

그룹 대표 신선호씨가 출판사 기린원을 상대로, 울산 그룹의 성장과 몰락과정을 그리며 무단으로 신선호씨와 가족사진을 실은 ‘서울은 지금 몇 시인가’라는 책에 대해 서적 인쇄 및 발매금지에 관한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시중에 판매중인 책의 인쇄와 제본, 발매, 배포행위를 금한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서 처음으로 초상권을 인정했다[23]. 법원은 비록 공개된 것이라 하더라도 상업적 목적을 띠는 책에 허락 없이 함부로 사용한 것은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법원 결정이 나온 후부터 초상권의 권리개념과 보호범위를 명료화 하려는 논의들이 일부 있었으나 본격적인 연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서이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주로 언론진흥재단(구 언론연구원/언론재단)이 발행하는 『신문과 방송』과 언론중재위원회가 발간하는 『언론중재』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1993년을 지나면서 초상권의 범주를 좀 더 넓게 파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진다. 이는 헌법적 측면 뿐만 아니라 「민법」 측면에서도 초상권을 파악하려는 시도였다. 김주수는 초상권 침해를 민법 제751조 제1항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 가운데 ‘기타 정신상 고통’을 주는 것으로, 정조, 생명 등의 침해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하고자 주장하였다[24].

이러한 연구 경향은 2000년대 초반까지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점차 초상권의 권리 개념을 명확히 하고 초상권 보호 범위를 명료화하면서 초상권을 하나의 독립적이고 특수한 인격권으로 파악하려는 논의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초상권을 ‘촬영·작성 거절권’과 ‘공표 거절권’은 인격권으로, ‘초상 영리권’은 재산권으로 별도의 권리로 파악하려는 시도도 여기에 포함된다. 재산권으로서 퍼블리시티권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25][26].

초상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연구가 시작된 것은 2005년 「언론중재법」이 제정되면서 초상권이 인격권 일부로 명문화 되고 면책사유가 명시되면서부터이다. 「언론중재법」 제5조 제1항에 인격권의 범주 가운데

하나로 초상권이 포함됐지만 개념이 명료화 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인격권의 일부로 초상권이 「언론중재법」에 명시되면서 독립된 인격권으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연구와 논의를 촉발하였고 초상권 침해 면책 사유에 관한 논의나 공인관련 초상권 침해에 관한 주제들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졌다[27-29].

이처럼 초상권 개념과 범주는 법원 판례와 학술적 논의를 통해 정립되는 과정을 거쳤다. 심석태(2014)는 1996년 초상권의 헌법적 근거를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에서만 찾는 판례의 등장을 계기로 어떤 경우로 초상권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권과는 독립된 권리로 인정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초상권의 내용을 이루는 촬영·작성 거절권과 공표 거절권이 점차 절대화 하는 하는 쪽으로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초상권과 언론의 자유가 갈등관계에 놓일 때 법원은 초상권 침해에 따른 개인의 인격권 보호에 치중해 언론의 자유가 갖는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며 초상권의 보호영역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재검토를 제안하고 있다[30].

초상권을 다룬 기존의 연구들은 초상권의 권리범주를 소개하거나 특정쟁점에 대한 판례평석을 통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어서 초상권 침해와 구제법리를 이론화할 수 있는 논거제시가 미흡했다.

3. 초상권 침해 특성과 유형

언론에 의해 초상권을 포함한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됐다면 인격권을 우선해 법적 제재를 가할 것인지 아니면 언론의 면책을 허용해 언론의 자유에 우선권을 둘 것인지는 언론 자유의 한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31].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언론보도로 초상이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신상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나 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하는 낙인효과로 회복할 수 없는 인격권 침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에 반해 언론은 알권리를 내세워 공공성이 높은 경우는 보도의 신뢰성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어느 정도의 초상 공개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언론보도로 초상권이 한번 침해되면 원상복구가 어

려운 특성이 있으나 명예훼손 피해처럼 형법상의 제재는 없고 단지 민사소송법상 손해배상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한국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미국처럼 다른 기본권보다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는 절대적 권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수정 헌법」 제1조에서 언론의 자유를 규제하는 어떤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지만 한국은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21조 제4항에서는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 또는 공중도덕이나 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 언론의 자유가 절대적 권리가 아니고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32].

하지만 언론 자유의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 김철수(2013)는 언론자유가 다른 기본권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 현대 「헌법」의 한 경향이라고 주장했다[33]. 헌법재판소도 “언론의 자유는 바로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특히 우월적 지위를 지니고 있는 것이 현대 「헌법」의 한 특징”이라고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34].

그러나 언론 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가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 초상권 보호와 언론의 자유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이익형량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익형량은 초상권을 비롯한 인격권과 언론자유가 충돌할 경우 충돌하는 두 기본권의 법익을 개별적인 사항별로 비교, 형량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법원은 초상권이 침해됐을 경우,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한 위법성 판단은 구체적 사안에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침해법익과 피해법익의 이익형량을 통하여 내리고 있다. 대법원은 이익형량의 구체적 기준으로 ① 양 법익 내용의 비교, ② 피해법익의 중대성, ③ 피해 정도, ④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피해이익의 보호 가치 ⑤ 침해행위의 보충성, 긴급성, 상당성을 들고 있다[35].

언론보도에 의한 초상권 침해는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첫째, 초상 촬영에 동의했으나 원래의 목적이나 예상과 달리 당사자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불리

한 방법으로 보도하는 경우이다. 결혼식 장면 촬영에 동의했으나 나중에 호화결혼식을 비판하는 보도에 자료화면으로 얼굴 모자이크 처리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로 초상촬영에 동의했으나 동의 당시의 약속을 언론사가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이다. 신분과 초상 노출 방식을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하였으나 방송사의 화면처리나 음성변조가 미흡해 주변사람들로부터 특정인임을 알아 볼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셋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언론사가 공익성을 내세우며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경우이다. 초상권 침해 분쟁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으로 범죄보도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다[36]. 그러나 공공집회나 시위에 나섰다가 언론에 초상이 촬영되어 보도된 경우는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37]. 집회나 거리시위에 나서는 자체가 자신들의 주장을 외부에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언론보도가 되는 것을 기대하거나 감수하는 것으로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언론에 의해 초상권이 침해됐다고 하더라도 언론이 면책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보도의 공익성이 높은 경우이다. 언론에 의해 초상권이 침해될 경우 모두 인격권 침해로 판단하여 언론의 책임을 묻는다면 언론은 설 자리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초상의 촬영과 보도에 필요한 동의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카메라 앞에서 스스로 촬영에 응해 포즈를 취하거나 카메라를 피하지 않고 웃으면서 촬영에 응한 경우는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것이다[38]. 그러나 법원은 묵시적 동의에 대해서 명시적 증거가 없으면 사실상 인정하지 않으면서 언론사가 대부분 패소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III. 연구 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1]. 초상권 침해 언론 소송의 경향과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초상권 침해 언론소송의 결과와 승패소 요인은 무엇인가?

초상권 침해와 관련해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판결을 모두 분석해 초상권 침해와 관련한 언론소송의 경향과 특성을 살펴본다. 최종심을 기준으로 전체 판결건수와 연도별 판결 분포와 소송 추이, 매체 유형별, 원고 유형별 소송의 빈도와 결과, 초상권 분쟁 추이의 변화를 분석했다. 이어 언론사의 승패소 결과와 승소사유, 매체 유형별, 원고 유형별 언론 승패소 결과와 승패소 요인, 범죄보도 관련 승패소율, 손해배상 인용액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초상권 침해 판결의 특징과 언론이 유의할 점을 추출한다.

2. 연구방법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해 우선 각종 판례검색 사이트와 판례가 소개된 문헌 연구를 통해 초상권 침해 판결이 처음으로 이뤄진 1982년부터 2014까지 33년간 초상권과 관련된 언론소송 판결 전부를 추출하고 판결내용을 분석하였다.

판례분석을 위한 판결문 수집은 한국 언론중재위원회가 발간한 <국내언론관계 판결집> 제1집부터 제15집, <언론관련 판결 분석보고서>(2005년~2013년), <언론중재>에 게재된 '최근의 국내언론관계 판결', 한국 언론재단의 '언론판례정보', 대법원의 종합법률정보(www.scourt.go.kr) 판례검색과 판결문 제공서비스, 인터넷종합법률서비스 사이트인 로앤비(www.lawnb.com) 판례검색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 언론보도를 대상으로 청구한 초상권 침해 관련 사건의 판결만 추출하였다.

수집된 초상권 관련 판결 가운데 본 연구의 핵심적 논의 대상인 언론보도에 의한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언론 소송 81건의 판결을 선택하여 최종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유목은 최종심 법원심급과 선고 일자, 원고 유형, 언론매체 유형, 침해유형, 언론사 승패여부와 사유, 손해배상 액수로 정하였다.

분석 대상 판례들 가운데는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소송이 제기됐어도 초상권 침해 여부가 법원에서 논의된 경우도 포함시켰다. 이는 초상권의 법리 형성 단계에서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언론소송에서 초상권 침해를 별도의 청구원인으로 하지 않고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의 부수적 원인으로 법원이 초상권을 논의한 것을 감안한 것이다.

이렇게 수집된 판례 가운데 상소를 통해 판결내용이 여러 개 있는 판결문은 상급심을 기준으로 1건으로 집계하였다. 판례 검색을 위한 검색 키워드로는 ‘초상’, ‘초상권’, ‘보도&초상권’, ‘인격권’, ‘보도&인격권’, ‘사생활 침해’, ‘프라이버시’, ‘명예훼손’을 설정하였으며 검색된 판례 중에 언론보도와 관련 없는 초상권 침해 소송은 제외하였다.

분석대상인 언론매체는 크게 신문, 방송, 잡지, 통신, 인터넷으로 유형을 분류했다. 초상권 침해분쟁이 통상적인 보도나 프로그램이 아닌 광고와 관련된 사례는 제외하였다.

IV. 분석결과

1. 언론에 의한 초상권 침해 판결의 특성

법원에서 서적에 의한 초상권이 처음 인정된 1982년 이후 2014년까지 33년 동안 언론에 의한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인격권 침해로 소송이 제기된 사건은 모두 81건으로 집계됐다. 초상권 침해관련 소송 81건을 심급별로 분류하면 1심으로 마무리된 판결이 50건, 항소심까지 간 것이 22건, 상고심은 모두 9건으로 나타났다. 3심까지 간 상고심 사건은 모두 9건으로 초상권 침해 여부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언론사가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다고 주장한 사건들이었다.

3심까지 간 상고심 사건은 ① 이혼소송중인 부인이 남편을 청부살해하려한다는 피의사실 보도와 함께 초상이 방송과 신문에 보도됐으나 무죄로 판명이 나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경우, ② 1998년 MBC가 유방확대 수술 부작용으로 고통을 겪는 피해자의 얼굴 옆모습을 그림자 처리했으나 주변인이 인식이 가능해 초상권 침해가 인정된 사건, ③ 자동차 연비 향상장치가 효과가 없다는 내용의 방송뉴스에 연비향상에 효과가 좋은 제조업자 인터뷰를 효과가 없는 업자들과 같이 편집해 연비향상 장치가 과장광고인 것처럼 보도했다가 초상권 침해가 인정된 사건, ④ 병원 다큐멘터리 방송에서

미숙아에게 젖을 물리는 장면을 동의 없이 방영했다가 초상권 침해가 인정된 사건, ⑤ 간첩단 사건을 보도한 신문보도에 피의자 초상과 인적 사항이 공개돼 초상권 침해가 인정된 사건, ⑥ 총선거 관련 뉴스 보도에서 직장상사의 동의만 받고 전화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원고의 초상을 방영한 사건, ⑦ 파파 값의 비밀이라는 제하의 방송에서 미용가격표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게시한 다음 고액의 요금을 요구한 사례로 원고의 미용실을 방영한 경우, ⑧ 케이블 종교방송에서 이단으로 지칭한 교회에서 교주를 찬양하는 어린이 합창단의 동영상을 그대로 내보내 초상권을 침해한 사건, ⑨ 인터넷 신문이 재벌가의 재혼소식을 보도하면서 양가 상견례와 데이트 장면을 몰래 촬영해 사생활과 약혼녀의 초상권을 침해한 사건이다.

초상권 관련 언론 소송 81건을 최종심을 기준으로 연도별 판결 빈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연도별 심급별 초상권 판결 분포

| 판결 연도 | 판결 건수 | 1심 | 2심 | 3심 |
|-------|-------|----|----|----|
| 1990 | 1 | 0 | 1 | 0 |
| 1991 | 0 | 0 | 0 | 0 |
| 1992 | 0 | 0 | 0 | 0 |
| 1993 | 0 | 0 | 0 | 0 |
| 1994 | 2 | 1 | 1 | 0 |
| 1995 | 0 | 0 | 0 | 0 |
| 1996 | 1 | 0 | 1 | 0 |
| 1997 | 1 | 0 | 1 | 0 |
| 1998 | 7 | 2 | 3 | 2 |
| 1999 | 3 | 1 | 1 | 1 |
| 2000 | 4 | 3 | 1 | 0 |
| 2001 | 2 | 1 | 1 | 0 |
| 2002 | 5 | 2 | 3 | 0 |
| 2003 | 2 | 1 | 1 | 0 |
| 2004 | 1 | 1 | 0 | 0 |
| 2005 | 3 | 3 | 0 | 0 |
| 2006 | 6 | 6 | 0 | 0 |
| 2007 | 8 | 7 | 1 | 0 |
| 2008 | 7 | 4 | 2 | 1 |
| 2009 | 6 | 4 | 0 | 2 |
| 2010 | 6 | 3 | 3 | 0 |
| 2011 | 4 | 1 | 1 | 2 |
| 2012 | 6 | 6 | 0 | 0 |
| 2013 | 3 | 2 | 0 | 1 |
| 2014 | 3 | 2 | 1 | 0 |
| 계 | 81 | 50 | 22 | 9 |

법원에서 언론과 관련해 초상권 관련 최종심 판결이 처음 나온 것은 1990년 고등법원 판결이다. 이는 1989년의 1심 판결을 확정지은 것으로 여성월간잡지에 유명 연예인의 영상집속 사진을 명예 훼손적 기사와 함께 실었다가 잡지사측이 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1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문 사건이었다[39].

1990년 고등법원 판결 이후 1997년까지 해마다 1~2건에 불과하던 초상권 관련 언론 소송은 잡지의 선정적 기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늘면서 1998년 최종심 기준으로 7건이 몰리는 등 1990년대 말에 소송이 집중됐다. 2000년 이후에는 해마다 2~5건의 판결이 꾸준히 나오다가 2005년 7월 언론 중재법 시행의 영향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판결건수가 6~8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초상권 관련 소송은 초상권 침해로 직접적 청구사유로 하기 보다는 대부분 명예 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청구된 것이었다.

언론소송에서 명예훼손과 함께 초상권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해 처음 손해배상이 인정된 것은 1994년 이대생 뉴스위크지 관련 판결이다. 이 사건은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1991년 11월11일자에 한국의 과소비와 배금주의 풍토를 비판하면서 기사 중간에 이야기를 나누며 대학 정문을 나서는 이대생 5명의 사진을 싣고 “돈의 노예들: 이화여대 학생들(‘Slaves to money’:students at ewha women’s university)”이라는 부제를 달아 무단 게재하자 해당 여대생들이 소송을 제기해 초상권 침해가 인정된 사건이다[40].

1990년대 말에 초상권 침해 분쟁이 늘어난 것은 인권 의식이 높아진데다 1990년대에 월간잡지가 난립하면서 선정적이고 자극적 보도가 많았던 데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성 월간잡지에 ‘내가 연하의 남자와 사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인터뷰를 한 적도 없는 여성들의 사진을 싣거나, 유명 여류작가의 전 남편과의 연애와 결혼 이야기를 싣으며 인터뷰를 거절한 교수 남편의 대학앨범 사진을 무단으로 잡지에 실었다가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2000년대 들어 월간 잡지를 상대로 한 분쟁이 현격하

게 줄어든 대신 초상권 관련 분쟁은 TV 방송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텔레비전의 컬러 방송이 본격화하면서 방송의 영향력이 급격히 커지면서 초상권 분쟁도 파급력이 큰 방송매체에 몰리는 경향을 보였다. 더구나 TV 방송은 영상을 필수적으로 사용해야하는 매체 특성상 초상의 노출 빈도가 많을 수밖에 없어 방송에 의한 초상권 침해 가능성이 그만큼 큰데다 이에 따른 분쟁이 늘어난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었다.

초상권 침해를 단독 청구원인으로 언론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은 2000년부터이다. 그 이전에는 초상권 침해는 주로 명예훼손의 한 부분으로 주로 다루어진 반면에 초상권을 단독 청구원인으로 소송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처음으로 초상권 침해를 단독 청구사유로 손해배상이 인정된 것은 2000년 도주차량을 추적해 범인 검거에 공을 세운 KBS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소개된 모범운전자 방송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방송사가 일요스포츠에 방영된 내용을 원고의 동의 없이 교통연수원 안전교육 교육용 자료로 활용하도록 대량 복제 판매한 사건이다.

법원은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대량으로 복제 판매하거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방영하도록 제공하는 것은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시했다. 원고의 추가적인 동의가 있어야한다는 것이다[41].

초상권과 관련한 언론 소송 81건을 원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인이 64건(79%)으로 가장 많았고, 고위 공직자, 정치인, 기업인, 연예인 등 공인이 17건으로 나타나 전체의 21%를 차지했다.

표 2. 원고유형별 초상권 소송 건수

| 원고유형 | 건수 | 비율(%) |
|------|----|-------|
| 일반인 | 64 | 79.0 |
| 공인 | 17 | 21.0 |
| 합계 | 81 | 100 |

공인으로 분류된 원고는 방송앵커, 정치인, 연예인, 목사, 사업가, 단체대표, 유명인, 재벌 기업인 등이 포함

때 있다.

초상권 관련 언론소송 81건을 소송이 제기된 매체 유형별로 분류하면 방송이 53건(65.4%)으로 가장 많았고 잡지 11건(13.6%), 신문 9건(11.1%), 인터넷 5건(6.2%), 방송·신문 3건(3.7%)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언론매체별 초상권 소송건수

| 언론매체 | 소송건수 | 2000년 이전 | 2000년 이후 |
|-------|-----------|----------|-----------|
| 방송 | 53(65.4%) | 7(43.8%) | 46(70.8%) |
| 신문 | 9(11.1%) | 1(6.2%) | 8(12.3%) |
| 잡지 | 11(13.6%) | 7(43.8%) | 4(6.1%) |
| 방송·신문 | 3(3.7%) | 1(6.2%) | 2(3.1%) |
| 인터넷 | 5(6.2%) | 0(0.0%) | 5(7.7%) |
| 계 | 81(100%) | 16(100%) | 65(100%) |

특히 2000년 이후에는 잡지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급격히 줄어든 대신 방송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 눈에 띄게 증가해 2000년 이후 방송이 초상권 소송 전체의 71%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2. 초상권 언론 소송의 결과와 언론 승패소 사유

전체 초상권 관련 소송 81건 가운데 언론사가 승소한 사건은 23건, 패소한 사건은 58건으로 언론사 승소비율은 28.4%에 그쳤다. 언론사 승소율이 낮은 것은 초상의 촬영과 보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거나 당사자가 동의를 했더라도 예상과 달리 사용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 면책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언론사가 승소한 판결로는 ① 앵커출신 차장급 방송기자가 기자신분을 내세우며 음주단속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도한 것, ② 하반신만 화면에 나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는 경우, ③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하여 중진 정치인의 자택안 회의모습을 찍어 신문에 게재한 경우, ④ 공연사기를 보도하며 연주회 지휘 장면을 보도한 경우, ⑤ 성폭행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연예인 모습 방영한 경우, ⑥ 소속사와의 갈등을 제보했으나 언론에 신세대 경영인으로 잘못 알려진 경위를 보도한 경우, ⑦ 해외 인턴십 문제점을 보도하면서 알선업체 직원 모습과 사무실 외경 등을 모자이크 처리한 경우, ⑧ 목사의 초상을 공개한 경우, ⑨ 국회 상임위 배정에 불

만을 표시하는 국회의원을 몰래 촬영해 보도한 경우, ⑩ 이미 공개된 연예인 사진을 명예훼손과 결부하지 않고 보도한 경우, ⑪ KT의 부당한 노사관리를 비판하면서 이미 공개돼있는 노조위원장의 사진을 방영한 경우, ⑫ 교회내부 동영상을 방영하면서 목사의 초상을 공개한 경우, ⑬ 경영행태를 비판하며 단체 대표의 초상을 공개한 경우, ⑭ 직장상사의 동의만 받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여론조사원의 초상을 방영한 경우, ⑮ 교회 신도들과 반대파 시위대와의 충돌장면에서 초상이 공개된 경우, ⑯ 시위참가자가 경찰을 때리려는 듯한 모습의 사진이 게재된 경우, ⑰ 광우병 촛불집회 현장에서 집회 찬반을 다투는 여자들을 말리다 사진에 찍혀 게재된 경우, ⑱ 북한 주민 상속 소송을 돕는 변호사가 서류를 보는 모습을 공개했으나 변호사의 초상이 이미 알려져 있거나 방송활동으로 유명한 경우, ⑲ CCTV에 찍힌 절도범 검거 장면을 방영했으나 노출된 뒷모습만으로는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는 경우, ⑳ 지명수배중인 조직폭력배 출신 기업인의 실명과 초상을 공개했으나 피해를 예방하고 조속한 검거를 촉구하는 공익이 초상권이나 사생활권 보다 더 우월한 경우,㉑ 보도 자료로 배포한 머드축제 포스터를 그대로 보도한 경우 등이다.

언론이 승소한 23건의 승소 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공인 관련이 9건으로 가장 많고, 공익성 4건, 피해자 특정 불가 4건, 집회, 시위 3건, 이미 공개된 초상 3건으로 분류할 수 있다. 언론이 승소한 사건을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언론이 승소한 초상권 소송 유형별 분류

| 언론 승소 사유 | 건수 |
|-----------|----|
| 공인 | 9 |
| 공익성 | 4 |
| 피해자 특정 불가 | 4 |
| 집회 시위 | 3 |
| 이미 공개된 초상 | 3 |
| 계 | 23 |

특히 1997년 이후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공인 이론의 적용으로 언론에 의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면책이 크게 늘어난 것은 공인에 대한 언론의 감시기능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일반인을 상대로 한 초

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언론사에 대해서 대부분 패소판결을 내려 인격권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언론중재법」이 시행된 2005년을 기준으로 언론소송율을 보면 2004년까지 초상권 관련 언론 소송 건수 29건 가운데 7건이 언론이 승소해 승소율은 24.1%에 불과했으나 2005년 이후 초상권 언론소송 52건 가운데 16건이 승소해 언론의 승소율은 30.8%로 높아졌다. 「언론중재법」 시행이후 언론의 승소율이 다소 높아진 것은 1990년대 말부터 법원이 일부 수용하기 시작한 공인이론에 따라 원고가 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언론에 의한 초상권 침해에 대해 면책하는 경우가 늘었고, 집회 및 시위에서의 초상 보도에 대해서는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언론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5. 「언론중재법」 시행전후 언론 승소율

| | 2005년 이전 | 2005년 이후 |
|----------|----------|----------|
| 언론 소송 건수 | 29 | 52 |
| 언론 승소 건수 | 7 | 16 |
| 언론 승소율 | 24.1% | 30.8% |

언론사가 승소한 사건 23건을 원고 유형별로 보면 원고가 공인인 경우 언론사 승소율이 52.9%에 달해 원고가 일반인인 경우의 언론 승소율 21.9%보다 두 배 이상 높아 공인에 대한 초상보도에서 일반인보다 비교적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원고 유형별 초상권 소송 언론 승패율

| 원고유형 | 언론 패 | 언론 승 | 계 |
|------|-----------|-----------|----|
| 공인 | 8(47.1%) | 9(52.9%) | 17 |
| 일반인 | 50(78.1%) | 14(21.9%) | 64 |
| 계 | 58 | 23 | 81 |

범죄 보도의 경우 초상권이 문제된 사건 17건 가운데 언론이 승소한 것은 4건에 불과해 언론사 승소율은 23.5%에 그쳤다. 범죄보도에서 언론의 승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법원이 보도내용의 공익성은 인정하면서도 범죄행위와 범죄혐의자를 구분해 혐의자의 초상을 공개하는 것은 공공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42].

언론이 패소해 법원에 의해 손해 배상이 인정된 사건 58 건의 손해배상금의 평균 인용액은 2,673만원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 평균 인용액이 2천 만원을 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초상권 침해 피해에 대해 법원이 손해 배상금을 거의 유일한 구제수단으로 인정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손해배상 평균 인용액을 매체별로 보면 방송(38건)이 1천598만원, 신문이 9천920만원, 잡지 3천122만원, 인터넷이 2천933만원으로 신문이 산술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스포츠 신문의 O양비디오 사건과 관련한 선정적 보도에 대해 4억4천만원의 이례적인 고액 손해배상금을 빼면 실제로는 손해배상이 인정된 4건의 평균인용액수는 1400만원으로 나타나 방송과 큰 차이가 없었다.

표 7. 초상권 소송 매체별 평균 손해배상액

| 방송 | 신문 | 잡지 | 인터넷 | 평균 |
|---------|---------|---------|---------|----------|
| 1천598만원 | 9천920만원 | 3천122만원 | 2천933만원 | 2천6703만원 |

V. 결론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언론을 상대로 제기된 초상권 침해 관련 소송의 최종심 재판 결과가 처음 나온 것은 1990년으로 월간잡지에 유명 연예인에 관한 명예 훼손적 내용을 실으면서 이미 배포된 사진 영상집속 사진을 수록했다가 1천만원의 손해 배상금을 물고 사과문을 게재한 것이었다.

둘째, 매체 유형별로 보면 1990년대에는 주로 선정적 보도가 많았던 월간잡지를 대상으로 하는 초상권 분쟁이 많았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방송을 대상으로 한 초상권 침해 분쟁이 크게 늘어났다. 2000년 이후에는 초상권 관련 언론소송의 71% 가량이 방송에 집중됐다.

셋째, 초상권 관련 언론소송의 결과를 보면 전체 81건 소송 가운데 언론사가 승소한 사건은 23건으로 언론사 승소비율은 28.4%에 그쳤다. 언론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다하더라도 동의의 범위를 초과했거나 예상과 달리 보도했다며 대부분 초상권 침해를 인정해 법원은 전체적으로 언론사가 주장하는 언론의 자유보다는 개

인의 초상권 보호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법원판결이 언론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최근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43][44].

언론이 승소한 23건의 승소 사유를 보면 공인이 9건으로 가장 많고 이미 공개된 초상 5건, 집회, 시위 3건, 피해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가 3건, 기타 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1997년 이후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공인 이론의 적용으로 언론에 의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면책이 크게 늘어난 것은 공인에 대한 언론의 감시기능을 법원이 인정함으로써 볼 수 있다. 특히 원고가 공인인 경우, 언론사 승소율이 52.9%에 달해 원고가 일반인인 경우의 언론 승소율 22%보다 월등히 높아 언론사를 상대한 초상권 소송에서 공인이 일반인에 비해서 불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보도의 경우 초상권이 문제된 사건 17건 가운데 언론이 승소한 것은 4건에 불과해 언론사 승소율은 23.5%에 그쳤다.

초상권을 다룬 기존의 연구들이 초상권의 권리범주를 소개하거나 특정 판례에 대한 평석을 통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으나 본 연구는 초상권 관련 언론소송 판결 사례 전부를 추출해 판결 경향과 추이, 특성을 분석한 것은 새로운 시도로서 의미가 있다. 언론 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면책의 기준이 되는 동의나 공익성에 관한 이익형량을 통해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법원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초상권이 우선인지 언론의 자유가 우선인지 판단하고 있지만 일관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초상권 면책 여부를 판단할 때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판례도 시대의 변천에 따라 조금씩 인식과 기준을 달리 할 수 밖에 없어 초상권에 관한 보다 많은 판례의 축적과 포괄적 연구를 통해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개인의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이영진, “초상권에 대한 소고,” 언론중재, 제34권, 제4호, pp.44-49, 2014.

[2] 손영준, “언론 조정 중재사례를 통해 본 초상권침해 현황 및 특징,” 언론중재, 제32권, 제4호, pp.7-19, 2012.

[3] 박재영 외, *한국 언론의 품격*, 파주: 나남, 2013.

[4] 방송기자연합회, *세월호 보도, 저널리즘의 침몰-재난보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4.

[5] W. T. DeVries, “Privacy protecting privacy in the digital age,” *Berkeley Technology Law Journal*, Vol.18, No.1, pp.283-312, 2003.

[6] 유의선, “디지털 취재환경에서의 초상권 침해와 구제,” *언론과 법*, 제7권, 제1호, pp.383-414, 2008.

[7] J. A. Albert, “The liability of the press for trespass and invasion of privacy in gathering the news - A call for the recognition of a news gathering tort privilege,” *New York Law School Law Review*, Vol.45, No.3-4, pp.331-388, 2002.

[8] 장호순, “영상저널리즘 시대의 보도영상과 인격권,” *언론중재*, 제31권, 제4호, pp.65-80, 2011.

[9] 강형철,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내용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제21권, 제1호, pp.7-46, 2007.

[10] 이재진, 동세호, “방송관련 초상권 침해소송에 나타난 ‘동의’의 적용범위에 대한 연구,” *언론과 법*, 제14권, 제1호, pp.101-148, 2015.

[11] 김상우, “텔레비전 뉴스의 모자이크 영상에 대한 비판적 연구,” *미디어와 공연예술연구*, 제9권, 제3호, pp.1-25, 2014.

[12] 박용상, *언론의 자유*, 서울: 박영사, 2013.

[13] 김재협, “기자의 취재현장 방문 주거침입인가 아니면 정당한 취재활동인가?,” *언론중재*, 제34권, 제2호, pp.32-41, 2014.

[14] 이재진, *한국 언론윤리법제의 현실과 쟁점*,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2.

[15] 이승신, 김연식, "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와 문제점," 사회과학연구, 제19권, 가을호, pp.65-94, 2009.

[16]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 16280 판결.

[17] 유의선, "디지털 취재환경에서의 초상권 침해와 구제," 언론과 법, 제7권, 제1호, pp.383-414, 2008.

[18] 박용상,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이론과 실제," 언론과 법, 제1권, 제1호, pp.5-31, 2002.

[19] 서울고등법원 1996. 6. 18. 선고 96나282 판결.

[20] 정경석, "초상권의 침해요건과 구제방법," 저스티스, 제98호, pp.122-146, 2007.

[21] 김옥조, *보도하는 자의 권리, 보도되는 자의 권리: 명예훼손, 프라이버시와 초상권 침해 그리고 범죄 보도의 함정*,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22] 임병국, *언론법제와 보도*, 서울:나남, 2009.

[23] 서울민사지방법원 1982. 7. 21. 선고 82카 19263 판결.

[24] 김주수, *채권각론*, 서울: 삼영사, 1997.

[25] 고명식, "언론에 의한 초상권 침해와 사법적 보호범리," 언론과 정보, 제9호, pp.97-137, 2003.

[26] 한위수,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국내 판결의 동향," 언론중재, 제19권, 제2호, pp.46-61, 1999.

[27] 차형근, "국내 초상권 판결경향에 대한 고찰," 언론중재, 제32권, 제1호, pp.67-89, 2012.

[28] 함석천, "법원판결과 언론환경의 변화-1980년대 이후 변환과정의 역사적 고찰," 언론중재, 제31권, 제2호, pp.49-59, 2011.

[29] 김재형, *언론과 인격권*, 서울: 박영사, 2012.

[30] 심석태, "한국에서 초상권은 언제 사생활권에서 분리 되었나-학설과 판례에서의 초상권의 독립적 인격권 인정과정과 그 영향," 언론과 법, 제13권, 제1호, pp.251-282, 2014.

[31] 이재진, *언론자유와 인격권*, 서울: 한나래, 2006.

[32] 성낙인, *헌법학*, 파주: 법문사, 2015.

[33] 김철수, *헌법학 신론*, 서울: 박영사, 2013.

[34] 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결정.

[35]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36] 김경호, "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 침해에 관한 연구: 언론과 수사기관의 책임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제12권, 제2호, pp.88-120, 2004.

[37] 서울중앙법원 2010. 10. 27. 선고 2009가합81994 판결.

[38] 함석천, "초상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범리 전개," 법조, 제55권, 제12호, pp.191-222, 2006.

[39] 서울고등법원 1990. 5. 4 선고 89나36528 판결.

[40]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3. 30. 선고93나 31886 판결.

[41] 서울지방법원 2000. 7. 4. 선고 99나83698 판결.

[42]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43] 심석태, "한국에서 초상권은 언제 사생활권에서 분리 되었나-학설과 판례에서의 초상권의 독립적 인격권 인정과정과 그 영향," 언론과 법, 제13권, 제1호, pp.251-282, 2014.

[44] 김시철, "언론출판의 자유와 인격권의 대립과 조화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저스티스, 통권 제47호, pp.53-116, 2015.

저 자 소개

동 세 호(Seho Dong)

정회원



- 1988년 2월 :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문학사)
- 2010년 2월 : 한양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박사 수료)
- 1988년 6월 ~ 현재 : SBS 기자

<관심분야> : 초상권, 방송, 언론법제, 취재보도

김 성 용(Sung Yong Kim)

정회원



- 2013년 2월 :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박사 수료)

<관심분야> : 출판콘텐츠, 멀티미디어

안 호 립(Horim Ahn)

정회원



- 2013년 2월 :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언론학 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인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관심분야> : 커뮤니케이션, 스피치, 토론, 방송